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 12. 8.)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의안번호 제2010 - 77호>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 2. 제안이유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 승강기산업밸리 내 대규모 투자기업(선도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코저 하며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사)승강기밸리 기업 협의회로부터 거창 승강기밸리 내 투자하고자 하는 선도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요청(2009. 2. 11)  
[특별지원 요구사항]
  - 입지보조금: 금년 12월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의 90% 지원

- 투자(시설, 설비)보조금: 시설비 중 용자상환기간은 3년거  
치 5년 균등상환, 이자발생분 중 기업체는 1% 부담
- 물류비 지원: 거창이전에 따른 추가발생 물류비 적자분  
3년간 지원

○ 위 지원요청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코자 함.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가. 지원대상

- 국내기업으로서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300명이상

나. 지원내용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  
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가. 지원대상: 승강기산업밸리에 창업,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체

나. 지원내용

-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승강기 밸리 투자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 4. 관련법령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보조금 지원

## 5. 검토결과

○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강기산업밸리의 성공을 위하여는 초기 투자한 기업체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특별 지원시 소요예산 판단]

#### □□ 재원별 소요예산 [일반산단 5만평 입주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민자)
계	257.53	10.34	26.63	188.94	31.62
입지 보조금	134.99	10.34	0.43	124.22	
시설자금 이차지원	85.40		26.20	59.20	
물류비 손실보전	5.52	-	-	5.52	-
주 거 지 원	31.62	-	-		31.62

#### □□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 2010	2011	2012	2013 ~	비고
계	188.94	-	65.95	51.78	71.21	
입지 보조금	124.22	-	55.95	43.52	24.75	
시설자금 이차지원	59.20	-	7.00	7.00	45.20	
물류비 손실보전	5.52	-	3.00	1.26	1.26	

○ 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거창  
군민 채용의무와
- 이차보전금의 경우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각각 상이함으로 일정 비율의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부문  
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과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범 령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0.11.15>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개정 2010.03.29>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30>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개정 2010.03.29>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0.03.29>

###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 제 1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취득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지목	소재지	면적				
계		1필지	2,560	99,584			
1	과수원	거창읍 대동리 311-1	2,560	99,584	2011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신축	이옥남

###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 5. 검토의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지 매입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취업, 재활 등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창읍 대동리 311-1번지에 부지 2,560㎡ 연건평 2,328㎡(3층)규모로 신축하며 그 소요 사업비는 총 3,379백만원임.
- 그러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부지 2,400㎡, 연건평 1,200㎡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부지 2,560㎡ 연건평 2,328㎡로 계획하고 있어 그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또한 소요 사업비(3,397백만원) 확보계획 및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